

조사보고서

2018. 1. 22.

추가조사위원회

목 차

I.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
II.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	5
1. 인사모 관련	5
2. 공동학술대회 관련	8
3. 조사 결과	13
III.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14
1. 배경	14
2. 조사 경과	15
3.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15
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17
5.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18
IV.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22
1. 개요	22
2. 관련 문서	23
3.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23
4.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25
5.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27
6.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8
7.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9
8.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30
9.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31
10. 조사 결과	32

V. 특정사건 담당재판부 등의 동향 파악	33
1. 문서 정보	33
2. 주요 내용	33
3. 검토	34
VI. 종합의견	35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I.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 추가조사위원회의 구성

- 대법원장은 2017. 11. 3.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조사를 결정하였고, 같은 달 13. 위원회 형태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민중기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명함
- 위원장은 2017. 11. 15. 성지용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최한돈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최은주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안희길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형률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구태희 교수(사법연수원)를 위원으로 위촉함
- 위원회는 2017. 11. 17. 17:00 서울고등법원 제14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의 대강과 활동계획을 정하였고, 같은 달 20. 사법연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함

2. 조사의 목적과 원칙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의혹의 해소
-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사법부 구성원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
-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

3. 조사의 기간과 장소

- 조사기간
2017. 11. 20. ~ 2018. 1. 22.
- 조사장소
사법연수원 사무실, 제4세미나실(컴퓨터 분석실), 5층 중회의실 등

4. 조사의 대상과 범위

- 조사의 물적 대상 :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임효량 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HDD와 SSD(저장매체)
- 조사의 시적 범위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 11.경부터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7. 4.경까지
- 2017. 11. 23.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사대상인 HDD, SSD에 대한 보존조치(복제장비를 이용한 하드카피)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7. 공문으로 재차 요청함
-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2017. 11. 29. 21:00~24:00경 HDD 3개와 SSD 3개(임종현 전 차장 사용 HDD, SSD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매체)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취함
- 2017. 12. 1. 11:00~12:00경 임종현 전 차장이 사용하던 HDD와 SSD는 이를 분리하여 봉인함(보존조치 없이 법원행정처가 보관함)
- 2017. 12. 22. 법원행정처에 임종현 전 차장 HDD 및 SSD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협조가 어렵다고 답변함
- 2018. 1. 8. 공문을 통하여 재차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12. '추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회신함
- 임종현 전 차장이 사용하던 저장매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조사하였음

5. 기술자문위원의 선임

- 2017. 11. 23. 물적 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부분의 자문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남현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오현석 판사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함
- 기술자문위원은 기술적인 자문만 하였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추출된 파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음

6. 컴퓨터 사용자 등의 조사 동의 내지 참여 여부

- 위원회는 활동개시 이후 한 달여간 조사대상 컴퓨터와 관련한 당사자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2017. 11. 30. 공문으로 물적 조사에 대한 참관을 요청하였다가, 같은 해 12. 7. 참관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음
- 위원회는 조사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과정의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물적 조사로 사적 정보가 누설되거나 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으며, 이러한 조사에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2017. 12. 26. 물적 조사를 개시함.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업정일 2~3일 전에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참여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참여를 요청하거나 실제 참여한 당사자는 없었음

7. 조사의 방법과 문서파일의 선별

- 조사대상 및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검색어¹⁾가 한개 이상 포함된 파일을 기술적으로 추출함²⁾
- 추출된 파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함
 - 법원행정처(인사·감찰부서 제외)가 법관의 성향, 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보관한 문서
 - 위 문서 가운데 관련 자료 수집의 경위, 문서 작성의 동기와 목적, 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법관의 연구 활동과 판사회의 등예의 개입 및 재판에의 직·간접적인 관여 등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 다만 법관의 인사, 내부 보고와 기관 사이의 협조, 여론에 대한 대응 등 사법행정상의 필요와 합목적성이 인정되는 문서는 제외함

8.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의 처리






-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정상파일³⁾)에서 약 460개,

1) 성향, 동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이름 등

2) SSD는 저장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기술적 이유로 복구율이 현저히 낮았음

유실파일⁴⁾에서 약 300개가 발견됨)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특히 암호가 설정된 정상파일 중 아래의 5개 파일은 제목 자체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술적 제약과 보안유지의 어려움, 협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

 84748_(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hwp	2017-02-06 오전 12:34
 86250_(160408)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2016-04-11 오후 10:20
 86311_(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종현수정].hwp	2016-04-15 오후 2:23
 86312_(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hwp	2016-04-15 오후 2:24
 95483_(160407)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2017-01-12 오후 2:40

9. 보안유지 조치

- 위원회는 조사대상 파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다음의 보안유지 조치를 취함
- 사법연수원 건물의 구조와 동선을 고려하여 사람의 왕래가 가장 적은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의 열쇠는 위원이 항시 휴대하면서 관리함
- 조사에 소요되는 장비 일체(조사용 고사양 컴퓨터 4대, 인터넷용 일반 컴퓨터 1대, 모니터 9대, 프린터 1대, ENCASE 1개)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지원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만 조사를 진행함
- 조사에 참여하는 장비운용자 등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위원이 추출된 문서를 선별하는 동안에는 가급적 퇴실하도록 하며, 조사장소에 출입하는 사람 모두(위원 포함)에 대하여 휴대전화, USB 등의 장비를 일체 지참하지 못하도록 함
- 조사장소에 장비 운용자가 있는 동안에는 위원회의 위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실무관이 함께 재실함
- 조사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일체 망에 연결하지 않음. 단, 필요한 경우에는

3)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파일로 원 파일명의 확인이 가능함

4) 삭제되었던 것을 복구한 파일로 원 파일명의 확인이 불가능함

전산정보관리국 실무관이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장비(속칭 '에그')를 이용하여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실제 인터넷에 접속한 적이 없음)

- 조사장소에 CCTV를 2대 설치하여 조사장면을 24시간 녹화함
- 조사대상에서 추출된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조사장소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일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단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실 내에서 관리하는 '문서목록' 내지 '파일목록'에 기재한 후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고, 열람을 마친 이후에는 다시 조사장소로 반입하여 파쇄 내지 삭제하도록 함

10. 인적 조사

- 선별한 문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7명에 대한 인적 조사(대면방식)를 실시하였음

II. 인사모⁵⁾ 및 공동학술대회

1. 인사모 관련

가. 인사모 동향 파악의 경위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던 이규진 상임위원⁶⁾은 2015. 7. 7. 코트넷 국제인권법연구회 게시판에 인사모 제안 글이 게시되기 이전에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으로부터 '연구회 내 소모임에서 사법제도, 법관인사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는데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

나. 2015년 인사모 활동내용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 무렵부터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로부터 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아래와

5)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의 약칭임

6) 이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편의상 '이규진 상임위원'이라 함

같이 일련의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보고함

- 보고서에는 참석자와 논의 주제, 논의 결과 등 코트넷 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을 넘어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법관과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간략하게 기재되었음

1) 2015. 7. 21. 첫 예비모임 관련 보고('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7))

- 참석자 12인의 이름(현재 소속법원, 연수원 기수 표시)
- 구체적 논의 내용(논의된 내용 전반, 주요 논의대상 등)
- 그 중 상고법원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지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중립적 의견이 다수였고 이○○ 부장만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함. 박○○ 판사 역시 신중한 입장의 의견을 밝혔다고 함.
추후 연구를 계속하지는 의견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임』
- 『외부로의 의견 표출에 관하여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함. 커뮤니티 회장과외의 의견 조율, 대법원에서의 의견 전달 및 의견 교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제시되었고, 그에 관하여 찬성이나 반대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함』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논의의 부적절 문제’ 와 ‘상고법원 등 현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 문제’ 8)에 관한 검토의견
『향후 논의의 수준이나 범위가 상향되거나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추후 상황을 체크해 나가면서 막을 수 있는 문제로 보임. 모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임』
『관심을 갖고 추후 모임활동을 주시한다면 상고법원에 관하여 대법원과 다른 의견의 외부 표출문제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2015. 8. 11. 두 번째 예비모임 관련 보고('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보고(2)')

- 참석자 16인의 이름(현재 소속법원, 연수원 기수 표시)
『부장판사 참석자가 늘었음. 총무인 박○○ 판사가 개별적으로 이메일에 의한 연락을 취하여 모임을 주도하였음』

7) 해당 문건의 명칭. 문건 자체에서 굵은선 처리나 밑줄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표시하고 사람 이름은 비실명 처리함. 이하 같음

8) 실장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임

■ 상고법원 논의 내용

『이○○ 부장판사가 찬성론 입장, 이○○ 부장판사가 반대론 입장의 기초발표를 하고,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각 입장의 논거에 관하여 상호 토론이 이어졌다고 함』

『이○○ 부장판사는 문건을 작성하여 와서 심도 있는 비판을 하였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는 않은 채 구두로 발표만 하였는바, 추후 어딘가에 발표하려는 생각으로 보였다고 함』

『외부로의 의견표출 문제에 관하여는 신중론이 우세하였으나, 최소한 인권법 커뮤니티 내에 당일 논의된 내용을 올리는 문제에 관하여는 다수가 찬성의사를 표하였다고 함. 박○○ 판사가 당일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2015. 8. 21. 이전까지 참석 회원들에게 회람하기로 하였고, 커뮤니티에 올리는 문제에 관하여는 회람 이후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하였다고 함』

3) 2015. 9. 14. 정식 첫 모임 관련 보고['인권과 사법제도소모임 관련(3)']

- 2015. 9. 9. 인사모 주요 회원들과의 저녁자리 참석자, 회장 발언 요지, 참석자들의 반응
- 2015. 9. 14. 정식 첫 모임 주제 발표자 4명의 이름(소속 법원, 연수원 기수)
- 참가법관들 중 배석판사들과 부장판사들의 의견
-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수 명의 법관이 뒤풀이에 합류한 사실 및 해당 법관들의 이름

다. 2016년 인사모 활동내용 파악 보고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5. 11. 20.로 예정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총회에 앞서 2015. 11. 10.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장선거 불출마의사를 공지하였으나, 법원행정처(실장회의 및 처장 주례회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지 인사모에 대한 창구 역할 내지 협조 차원에서 회장 연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규진 상임위원은 총회 이틀 전 회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번복함. 결선투표 결과 이규진 상임위원이 다시 회장에 당선됨
- 이규진 상임위원은 2016년에도 인사모 모임 중 민감한 주제를 다룬 논의와 그 결과 등을 파악하였는데, 특히 2016. 4. 8. 제7회 모임(논제: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의 향방) 이후 그 모임에 참석한 법관을 통해 강경발언을 한 법관과 발언내용 및 특정 법관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였고, 그 무렵 인사모 카톡방이 개설되어 있음도 확인하여 보고함

2. 공동학술대회 관련

가. 진상조사 당시 제출된 대책문건 (1), (2)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이규진 상임위원은 진상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대책문건 (1), (2)'를 제시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책을 '대책문건 (1), (2)'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자신이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책문건 (1), (2)'외에도 5개의 공동학술대회 대책문건이 추가로 발견됨. 위 추가 문건들은 대부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되어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된 다음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됨[대책문건 (1), (2)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내용을 이규진 상임위원이 전체적으로 수정한 후 실장회의에 제시하여 논의 또는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이규진 상임위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실장들과 조사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자신이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보고한 '대책문건 (1), (2)'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나머지 추가 대책문건들의 존재 및 논의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결국 '위 대책문건 (1), (2)'가 작성·논의된 이후에도 법원행정처가 여러 차례 공동학술대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 사실 및 논의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음
- 이는 이규진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실언을 하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야기된 것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분위기가 강하였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그러한 법원행정처 내부의 분위기와 요청 때문에 위와 같이 대처한 것으로 보임

나. 추가 확인된 5개 대책문건

- 추가 확인된 5개 공동학술대회 대책문건은 대부분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과 다른 실의 심의관이 회의의 기초자료로 작성하여 기

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위 각 문건들이 실제로 실장회의 또는 처장 주례회의에 제시되어 보고 및 논의됨

- 위 각 문건에 의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확정(2017. 1. 23.) 되기 이전에는 주로 회장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문제제기, 연구회 명의로 행사 고수할 경우 회장의 학술대회 불참과 사임, 예산 지원 감축 등의 대책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됨
-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의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기존 논의를 포함한 단기방안(공동학술대회 대응 중심)과 중기방안(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이 로드맵(p12, 13 참조)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동학술대회 주제 한정 등의 협의 불발시 회장 등 사퇴 및 탈퇴, 중복가입 해소 조치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의 동요 및 탈퇴, 공동학술대회의 고립화 분위기 조성,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 개최로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다른 연구회로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다. 5개 대책문건의 주요 내용

1) 2017. 1. 12.자 인사모 대응 방안

-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인사모는 최초 설립 당시부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임**이었으나, **법관 사회 반발을 우려하여 현재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임**
 -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주제로 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임 ⇨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 [총론] 대응의 기본방향
 -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됨
 - 문제 해결의 주체는 **現 회장임** ⇨ 전임 회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
 - **법원행정처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서는 안 됨**
 - 철저하게 ‘단체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접근해야 함

- 現 회장은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비민주적인 모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해야 함

■ [각론] 구체적인 대응 방안

- 2017. 1. 15. 운영위원회 속행 ⇨ 사임하겠다는 뜻 시사

- 회장은 “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설명
- 만일 운영위원들이 회장에게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충분한 어조로 위와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서, ④ 위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아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단체 운영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설명을 추가함
- 운영위원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더 추기로 논의해 보자고 하면서 속행하자고 주장**
- 운영위원들이 속행하지는 주장에도 반발할 경우, 회장은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만 회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고 설명 ⇨ 회장이 사임의 뜻을 시사하면 운영위원들이 더 이상 강경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속행에 동의할 것이며, 아마도 뒤풀이에서 이야기하자면서 뒤풀이 자리로 이어질 것임**

- 2017. 2. 말 운영위원회 개최

- **‘소모임’ 주관 행사로 개최할 것을 주장**,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임시총회 소집’도 검토 가능(단,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

■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주요 대책

- ① 커뮤니티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 ② 신임 회장 학술대회 불참 → 신임 회장 사임

신임 회장 사임하면서 **고법부장 이상 회원들도 함께 탈퇴**하는 것이 적절

- ③ 예산 지원 감축(최소화)

2) 2017. 1. 16.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 운영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정리

- 회장: 커뮤니티 명의 사용한 외부행사 반대, 추가 논의 위한 운영위원회의 속행, 공동세미나의 연기 주장
- 나머지 운영위원들의 의견

■ 절차적 문제와 대회연기 의견에 대하여 가장 강경하게 반대한 법관의 이름

■ 회의 결과

- 연구회 명의로의 행사 고수할 경우 강경인(연구회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 등과 유화인(연구회 자체 학술행사로 개최하는 안을 제시) 및 각 안의 문제점

3) 2017. 1. 23.경 인사모 대응 방안

- 국제인권법연구회 온라인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 연구회 회장이 주장해야 할 내용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강행될 경우의 대책이 기재되어 있음(위 2017. 1. 12.자 대응 방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함)

4) 2017. 1. 말경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 2017. 1. 23. 운영위원회에서 2017. 3. 25. 공동학술대회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의결된 후 작성됨

■ 공동학술대회는 사법부 독립 및 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 있으므로 **대응 로드맵 마련 필요**

■ 구체적 대응 방안

■ 단기방안: 공동학술대회 관련 대응 중심

- 법관 상대 설득 논리

예규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가 해당 전문분야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는 것은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의 문제제기

- **다수 회원이 인사제도 세미나 개최의 부적절함에 동의할 경우** ⇨ 세미나 개최 백지화 및 인사모 활동 위축

- **부적절하지 않다**고 연구회 여론이 모아질 경우 ⇨ **'회장 직위 정상수행 불가'** 를 이유로 **회장직 사퇴**(고법부장, 심의관 출신 자법부장이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명분을 내세워 탈퇴) ⇨ 다수 법관들의 심리적 거리감 및 주저감 형성

■ 중기방안: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 중심

① **모든 전문분야연구회 상대로 규범 준수 요구 → 중복가입해소 + 연구 범위 준수 관행 정착시 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큰 타격**(중복가입자 일제 해소 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 **50%가 넘는 200명 이상 급감** →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

② 규정 위반 연구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삭감 및 해외 출장 제한

③ 보편적 인권 관련 사법부 내 다른 조직에서 대형 행사 주도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 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가입** ⇨ **보편적 인권 이슈 관련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연구회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

- 인사모 활동에 대한 자성 목소리 유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자신들이 인권 관련 사법부 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음. 사법부 내 다른 기구(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가 국제인권법의 전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 **사법행정 관련 문제제기에 매몰되어 정작 국제인권 관련 이슈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내부 자성 목소리 유도 가능

- 로드맵(안): 아래 표

시기	방안 예시
1월 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법 회장 등이 회원 상대 공식 문제제기 '인사제도 외부학술행사는 국제인권법의 전문분야 연구범위와 무관함에도 연구회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서 부당하고, 인권법 연구회 명의로가 아니라 인사모 명의로 행사 개최 가능한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 -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지 의사 밝힐 우군 필요함
2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인 일반 법관들이 인사모 의견에 동조할 경우 ⇒ 연구 주제 한정하는 방안 관련 협의 -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세미나 개최 - 사법부 예산 관련 논의도 상정 가능
2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하 협의 불발시) 회장등 사퇴 및 탈퇴 - 선배 법관들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동반 탈퇴 -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에 심리적 거리감 발생
인사이동 후 3월 초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정국장 명의 전문분야커뮤니티 운영 관련 안내 말씀 공지 - 중복가입 금지 규정 형해화로 선량한 법관들이 피해받고 있으므로, 모든 커뮤니티 및 회원들은 3월 중순까지 자율적으로 해소해주시기 바람 - 커뮤니티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람 - 중복가입 금지로 인한 학술정보 접근 제한 해소 등을 위하여 커뮤니티의 모든 게시글은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법관에게도 공개됨 ◆ 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검토 및 준비 착수
3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반 회원들 동요 및 탈퇴 - 선배법관들 대거 탈퇴 및 중복가입 금지 해소 조치 등의 영향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 형성

3월 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관 인사제도 관련 연세대 법전원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인사모 등 강성 세력 중심 개최, 고립화 분위기 조성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배정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 인사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활동 중지 여론 조성 ◆ 대안적 인권 대형 행사 - 인권 관련 법관들의 관심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다른 연구회 등으로 이동

3. 조사 결과

- 이규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 및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들이 확인되었음. 위 문건들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서, 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모임에 참여한 법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규진 상임위원의 인사모 활동내역 보고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 7.경의 예비 모임부터 2015. 9.의 정식 첫 모임 때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이 긴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문건으로 이규진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한 '대책문건 (1), (2)' 외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이 확인되었음. 위 추가 대책문건들은 임종현 전 차장의 지시로 주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회의자료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위 문건들은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 등에 제시되어 위 문건들에 기재된 대응방안이 논의된 점에 비추어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견제 논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초기 대응은 주로 공동학술대회를 연구회 내부행사로 축소시키고 외부 발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었

으나,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로는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한 중기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중기 대응 방안 중 일부인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실행되었음. 그 이외의 중기 대응 방안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⁹⁾

III.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1. 배경

- 우리법연구회는 2015. 5.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상고법원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음을 발표함. 이에 법원행정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구회 탈퇴 후에도 교류를 지속하면서 상고법원 반대 논의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세 걸집 방지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함¹⁰⁾
- 인사모도 2015. 7. 21. 예비모임에서 상고법원 논의를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등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자, 법원행정처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원행정처는 2015. 8.부터 2015. 10.까지 각급 법원 법관들로부터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및 소통 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직전인 2016. 1. 29. 인사모 모임에서 송○○ 판사가 수직적, 관료적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법원운영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를 판사회의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9) 대책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의 전 심의관들은 위와 같은 로드맵 등에 관하여 상부의 지시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고, 중복가입 해소 조치 이외에는 대부분의 대책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작용이 큰 방법이었어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법관들의 특정 커뮤니티 및 연구 모임에 관하여 이러한 내용의 부정적인 대책과 견제 방안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논의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임

10)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기획조정실

취지의 발표를 함

- 법원행정처는 이를 판사회의를 통한 사법행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¹¹⁾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위원 추천권자인 고등법원장에게 추천 희망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¹²⁾

2. 조사 경과

- 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법관들의 동향 내지 성향 등을 파악한 내용이 포함된 3개의 문건이 확인됨
- ①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은 송○○ 판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 문건이고, ②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은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며, ③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문건임
- 문건들은 모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하였고, 작성된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및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됨
-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및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을 가급적 충실하게 공개하기로 함

3.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가. 문건의 작성

- 2016. 2. 24.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하였음

나. 주요 내용

- 송○○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2016. 1.

11) 판사회의의 순기능 제고방안 (운영 측면 검토), 2016. 3. 14. 기획제2심의관실

1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2016. 4. 4. 기획조정실

29.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법관들을 기재하고, 그 중 우리법연구회 前·現 회원을 밑줄로 구분함

- 발표문의 요지, 송○○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 사법행정에 대한 주된 관심사 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기재함
- 송○○ 판사가 2016. 2. 1. 발표문에 기초하여 코트넷 '제도개선법관토론폰방'에 게시한 건의문 내용 및 그에 대한 법관들의 반응 등을 분석함
- 2016. 2. 26. 개최 예정인 인사모 모임 주제 및 참석예정자가 기재되어 있음
-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관하여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면서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을 분류하였는데, 핵심 그룹으로 우리법연구회의 부장판사 6명, 평판사 5명,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장판사 1명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주변 그룹으로는 우리법연구회의 판사 1명,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판사 9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핵심 그룹은 주로 우리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고, 주변 그룹은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들이라는 취지가 기재됨
-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음

다. 검토 결과

- 문건은 송○○ 판사를 비롯한 일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에 대한 주장을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핵심 그룹 법관들의 판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문건에는 발표문 작성 및 발표자인 송○○ 판사의 구체적인 특징(두 연구회

의 핵심 리더, 활동방식)과 주된 관심사(판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분류된 법관들의 이름이 특별한 분류기준과 내용도 없이 나열식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들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평소 동향이나 사법정책 관련 주장들은 법원행정처의 특별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및 그 대상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핵심 그룹'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의 일부 전 심의관들은 인적 조사 시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회원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4.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가. 문건의 작성

-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2016. 3. 7. 작성하였음

나. 주요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 판사가 2016. 3. 중순에 있을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하자, 법원행정처가 박○○ 판사의 의장 경선 출마 경위, 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되었을 경우의 문제점 및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임
- 박○○ 판사의 학력과 경력을 게시한 프로필을 기재하면서 2015. 4. 16. 게시판에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글을 게시한 경력을 기재하고 있고, 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서 2016년에 출범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이용하여 판사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그룹의 요청으로 의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 박○○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단독판사회의 명의로 건의문, 성명서를 채택하거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

의 사법행정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대응 방안으로는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선거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함¹³⁾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음

다. 검토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 판사는 2016. 3. 18. 출마의 변¹⁴⁾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에게 코트넷 메일로 전송하였고, 그 3일 후 직급별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음¹⁵⁾
-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원의 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해서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과 경력 등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선을 넘어 경선 출마의 경위와 지원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그 대응전략으로 다른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은 대응 방안의 실행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임

5.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가. 문건의 작성

-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2016. 3. 28. 작성하였음

나. 주요 내용

- 검토 배경과 관련하여 "핵심 그룹의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
⇒ 사법행정위원회가 '의례적 기구', '들러리'라는 프레임 구축 중"이라고 하

13) 문건에 지원단 중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 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출마자인 ○○○ 판사와 의장 경선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음

14) 출마의 변은 ① 과거 수행했던 최선임 단독(또는 배석) 판사의 경험을 살려 모순된 제도나 관행 개선에 앞장서겠다, ②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기수별, 업무별로 골고루 잘 안배하여 간사를 선임하겠다, ③ 난치병 판사에 대한 모금운동 및 질병휴직 중 판사에 대한 연구법관 선정에 관한 내규 검토 경험을 살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앞장서 돕겠다는 취지임

15) 이와 관련하여, ○○○ 판사는 3차례에 걸쳐 추가조사위원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법원행정처의 사주를 받아 박○○ 판사의 낙선을 위해 대항마로 나선 것이 아닌데, 법원행정처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향을 받아 경선에 출마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본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상황이기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 왔음

면서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 경과를 기재함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함

- 사법행정위원회가 실제 구성되면, **핵심 그룹은 위원 위촉 결과**를 두고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임
- 각 고등법원장이 이른바 '왕당파' 로 불리는 법관(예: 행정처 심의관, 기획법관·공보관, 수석부 배석판사, 해외 유학 선발 경력 등을 보유한 법관) 위주로 위원 추천할 경우 ⇨ **핵심 그룹에게 공격 기회** 제공하는 셈
 - ① 사법행정위원회의 **출범 의의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② **핵심 그룹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
- 아래와 같은 법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악의적 폄하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 있음
 - ① **핵심 그룹과 유대 관계**가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
 - ② **법관 사회에서 상징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법관
 - ③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서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관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함

- 후보자 추천 기준과 관련하여, 전제조건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갖춘 법관'으로 하되, '독선적이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법관은 제외'하고, 적극적 기준으로 '핵심 그룹과 유대관계'가 있고, 여성이나 장애 법관 등 '법관 사회의 상징성'이 있으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관을, 소극적 기준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특정 보직 경력이 있는 법관을 제시하고 있음
- 후보자 추천 명단과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관은 1순위에 적색으로, 1순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관은 2순위에 청색으로, 3순위는 흑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중 10명의 법관들에 대한 개별 추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으로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강경한 주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고, 추천 명단에도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송○○ 판사가 믿고 따르는 선배',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

장이 강한 편은 아님',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경선에서 박○○ 판사 지지',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 우리법연구회 핵심 그룹, 強性' 등의 기재가 되어 있음

- 세부 내용 및 추천 명단은 【별지 3】 기재와 같음

다. 이후의 경과

- 기획조정실은 2016. 4. 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핵심 그룹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의 호응을 얻을만한 법관들이 충분히 추천되어 핵심 그룹은 최소한 '위원 구성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사법행정위원회를 폄하할 명분이 없다고 적시됨
- 다만, 재판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원문화개선위원회 특정 법관 1명(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에 대한 교체 여부를 검토함

■ 문제점

- 여성 부장판사 없음
- 주류 법관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부장판사 부족
 - [진보] 이○○, 장○○, 유○○
 - [일반] 구○○, 이○, 조○○ ☞ 구○○, 이○ 부장판사가 強性이라는 평가

- 검토 의견으로, 부장판사급 위원 추가 추천 요청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고등법원장의 추천권 행사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오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는 예민한 안건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상유지'가 제시됨
- 다만, 예민한 안건이 많은 추후 출범할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향 판사의 위원회 좌지우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진보 성향 법관 후보군을 사전 검토하였듯, 이른바 주류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법관 후보군도 사전 검토하여 대항마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고등법원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이 제시됨

- 한편,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단은 2016. 4. 8. '사법행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법행정위원회에 특정 성향의 법관이 상당수 참여한 반면 다수 법관의 의사를 대변할 법관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신중히 안건을 결정·회부하더라도 실제 의견 수렴 및 회의 과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예상되는 모든 의견, 주장들을 정리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회의의 논의방향, 결론 등이 수용 불가능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라. 검토 결과

- 추천 명단 등에 기재되어 있는 ① 보수나 진보, 온건 및 강성 여부 등의 정치적 성향, ② 특정 성향의 다른 법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③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④ 가족관계 등의 사유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그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 문건 및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법관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분류한 특히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내용은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의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원 내에서 다른 위원회 등이 구성되거나 법관들의 여론 및 동향 파악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아무런 비판 없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정보가 그대로 누적되어 관리될 위험성이 있음¹⁶⁾
-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여러 가지 경력과 성향 및 활동내용 등에 기초하여 특정한 그룹 또는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일부 법관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그룹과 유형에 속한 법관들은 원천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안배하는 내용으로 후보자

16) 실제로 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에서 작성한 사법행정위원회 요구사항에 관한 보고에 첨부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명단에 기존 추천 명단에 없던 법관들에 대하여 경력, 성향, 가족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

검토를 하고 관련 정보를 추천권자인 각 고등법원장에게 제공함은 추천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후보자 검토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도 많이 추천되도록 하여 균형 있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건하거나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이나 "주류 법관"¹⁷⁾들을 추천하고, 검토 문건에서 이른바 '強性'으로 평가된 법관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다분하게 나타남

IV.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1. 개요

-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법원행정처가 그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임
- 다만, 법관들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거나 법관 여론 수렴을 위한 정보 수집은, ① 사법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② 그 방법과 절차도 가능한 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③ 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④ 수집한 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됨
- 물적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건들 중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건들만을 골랐고, 가급적 문건의 전부를 공개함

17)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2. 관련 문서

- 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본문 게시)
- 나.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별지 4】
- 다.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별지 4-1】
- 라.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별지 5】
- 마.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별지 6】
- 바.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별지 6-1】
- 사.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별지 7】
- 아.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 (본문 게시)

3.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가. 문건의 작성 및 배경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6. 8. 24. 작성하였음
- 정운호 사태 등 전·현직 부장판사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권한 행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방안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작성되었음

나. 주요 내용

- 주기적 점검 대상으로 법관의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언행 등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함. 법관의 사건처리 관련 점검 사항 이외에 법관의 언행 관련 점검 사항으로 법정 내 막말 여부와 함께, 법관의 부적절/비윤리적 법원 조직 내부 및 외부 행동을 제시함
- 공식/비공식적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가용한 공식적 방법 이외에도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다만,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

지가 필요함을 적시함

- 법원장, 기획법관 등의 공식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방안 이외에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①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②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등이 제시됨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대상으로 ① 법관들이 가입한 카페 '이판사판'의 익명게시판, ②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카페 '유스티티아', ③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등이 적시됨¹⁸⁾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앞부분 생략)

4. 점검 및 조치 시스템 구축

가. 착안 사항

▣ 정보 수집에서 개선사항 피드백까지 시스템화

- “정보수집 ⇨ 점검사항 추출 ⇨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 법원장에게 통지 등 대책 시행 ⇨ 개선사항 피드백” 의 단계별 시스템화

▣ 공식/비공식의 정보 수집 + 공식적 점검의 외관

- 공식/비공식 방법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필요**

- 공식적 정보수집이 주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
- **기용한 비공식적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공식적」 점검의 외관 필요

- 비공식적 정보수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 필요
-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이 진행된다는 외관 필요함

나. 정보 수집

1) 공식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 법원장으로부터 분기별 ‘각급 법원 특이사항’ 서면보고 수령

(이하 생략)

▣ 기획법관을 통한 정기적/비정기적 보고 수령

(이하 생략)

18) 문제 법관 관련 공개 SNS 점검에는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과 함께,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판, 실무관의 SNS 점검 등이 제시됨

▣ **고충처리법관 제도를 통한 고충 보고 수령**

(이하 생략)

▣ **소통의 창을 통한 정보 수집**

(이하 생략)

2)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수집**

▣ **거점법관을 통한 정보 수집**

-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 **특이통계 추출 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

(이하 생략)

▣ **SNS, 게시판 리서치를 통한 정보수집**

- 법관들 대상으로 한 **익명게시판(이판사판)** 점검
- 여성법관들이 가입한 '**유스티티아**' 의 동향 주기적 점검
-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법관 관련 공개된 SNS(가령 facebook)** 점검
 - 당사자 **본인**의 SNS 점검
 - 부장판사인 경우 그 **배석판사나 참여관, 실무관**의 SNS 점검

(이하 생략)

4.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2. 14. 작성한 것으로, 기획제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19) 폴더의 하위 폴더인 '각종 보고서'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던 정상 파일임20)
- 위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획조정실 ○○○ 심의관은, 기초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보고되지 않은 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사이동시 삭제한 파일이므로 정식 보고서라고 볼 수 없고, 당시 기획조정실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로 아직 부임 전이던 ○○○ 판사가 기초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5. 2. 15.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이 기초실장에게 보고되었다고 진술함. 실제

19) ○○○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심의관 이름임

20) 자세한 내용은 【별지 4-1】 참조

보고된 것이라고 진술한 문건은 위 문건과 대응방안에서 차이가 있는데, ①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신중한 운영, 위험성 있는 글의 삭제 또는 실명화를 권유하는 방안, ②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③ 법관 전체의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하는 방안, ④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관 전체의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 공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장기과제로 법관의 인터넷 활동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는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²¹⁾의 회원이었던 몇몇 여성 판사들이 익명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 등을 목적으로 2014. 10. 24. 개설함

나. 정보수집 방법

-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관련 게시물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거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임²²⁾

다. 주요 내용

- 위 카페의 개설경위와 카페 운영자, 회원 현황, 회원, 구성, 회원 가입절차, 카페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및 주요 게시판 개요 등이 정리되어 있고, 이어문제 소지 있는 주요 게시물 및 댓글이 소개되어 있음
- 상고법원 설치, 원○○ 형사사건 선고,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등의 이슈에 관한 법관들의 게시물 및 그에 대한 댓글이 문제 소지 있는 주요 게시물 및 댓글로 적시됨

21) 익명에 의한 글 게시 기능이 없음

22) 위 문건의 대응방안에는 카페의 자진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확보한 아이디, 비밀번호로 회원을 가장하여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올려 카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앞서 본 기획조정실의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7)'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인사모 관련 대응 중 중복가입 관행 전면 해소가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로 커뮤니티 게시물 전면 공개 방안이 실시되면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 대처방안으로,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법부 현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확산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② 법관윤리강령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후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내용이 제시됨²³⁾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음

5.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가. 문건의 작성 및 배경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7. 6. 작성하였음
- 상고법원안에 대한 내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 그 핵심 그룹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로, 이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및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행에 불안요소가 되므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반대 법관들이 세 결집을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논의를 주도하는 법관들은 성향상 단체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기재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① 핵심 세력, ② 움직임의 목적, ③ 세 결집 진행정도 및 고려 중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재야인사나 민

23) 그 외 네이버 여성 법관 전용 카페 ‘유스티티아’에 대해서도 익명게시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온 것으로 보임. 기획조정실이 2016. 7. 작성한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 검토’라는 문건에서 ‘유스티티아’ 익명 게시글을 통해 확인한 법관 사회 여론 동향을 정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네이버 여성 법관 전용 카페 유스티티아 게시글(2016. 5.)

▶ ‘요즘 이슈투자사기 사건이나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참 답답하다. 법원이 재판이 가해자와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구제만을 해준다는 또는 그마저도 안해준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든다

(이하 생략)

▶ 육아·생활정보, 인사 정보의 교환이 중심이 된 위 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댓글이 달리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었음

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법관들의 자체적 움직임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함

- 대응 방안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핵심 그룹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핵심 그룹을 참석하게 하여 입장 변화를 도모하며, 설득이 어려운 경우 압박책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5】 기재와 같음

6.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8. 18. 작성하였음
- 차○○ 판사가 2015. 8. 11. 법원 코트넷 사실심 충실화 토론광장, 민사재판 커뮤니티,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등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친분 있는 판사들에게 같은 글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의견을 구했는데,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는 위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보이면서 판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그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차○○ 판사의 코트넷 글 게시 경위와 게시글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 댓글의 분석, 상고허가제 등 차○○ 판사 주장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차례로 정리함
- 차○○ 판사가 주장하는 상고허가제와 법관증원론이 공론화되는 경우 대법관 증원론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되고, 차○○ 판사의 주장 및 이에 동조하는 법관들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상고법원 입법전략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함
-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의 내용, 독일 유학 복귀 후의 동향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주장은 코트넷 게시글 외에도 차○○ 판사가 다수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²⁴⁾의 내용을 통해 정리되어 있음
- 차○○ 판사의 동향과 스타일 등에 관련된 부분은 '방대한 양의 충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 등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임
- '사전예방적 대응 필요', '행정처 경험 있는 부장판사를 통한 논리적 설득 필요', '차○○ 판사의 법관증원론에 대한 공감 표시 및 법관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6】 기재와 같음

7.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9. 22. 작성하였음
- 차○○ 판사는 2015. 8. 11.부터 코트넷에 게시글을 계속 게시하고 판사들과 토론을 하였음. 한편 주간지 시사인은 2015. 8. 31. 차○○ 판사의 코트넷 게시글을 요약 보도하였고, 차○○ 판사는 2015. 9. 21. 시사인 온라인 판에 판사 투고 칼럼 첫 회를 게재함
- 이에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의 언론 활동과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나. 주요 내용

- 차○○ 판사 시사인 칼럼 중 문제되는 내용으로, 대법원의 월권적인 사실심 심리 관여, 법원행정처 사실심 충실화 대책의 비현실성, 고위직 법관들의 법관 수 증원에 대한 반대 언급 등을 지적함
- 차○○ 판사의 언론활동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차○○ 판사의 언론활동과 문제제기는 계속

24) 이메일은 차○○ 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포함된 다수의 판사들과 전체 메일의 형태로 주고받은 것이 인적 조사에서 확인됨

될 것이라 보인다'고 분석함

- 차○○ 판사가 본인의 facebook에 쓴 댓글 내용, 차○○ 판사가 2002년 고시공부 중 시각장애인의 사시합격을 도운 내용이 실린 동아일보 기사,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에 동참한 내용이 게시된 문화일보 기사 등이 차○○ 판사의 끈질긴 추진력, 비주류 활동가 성향의 근거 등으로 소개됨
- 여론의 역풍을 우려를 고려하여 선부른 개입은 자제하되, 공식적인 채널로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사태의 추이 예의 주시²⁵⁾,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을 위한 노력 계속 추진 등이 제시됨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6-1】 기재와 같음

8.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가. 문건 개요

- 위 문건은 기획조정실이 2015. 1 ~ 2월경 작성하였음
- 송○○ 판사가 2009. 3.부터 2015. 1. 15.까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6개 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함

나. 주요 내용

- 송○○의 프로필(문건에 기재된 프로필 첨부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과 함께 성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기재함
- 송○○ 판사에 대해서는 ① 사법제도 및 인사시스템 등에 관심이 있고, ②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③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있고, ④ 선동가, 아웃사이드 비평가 기질이 있다는 평가가 기재됨
- 문건에 적시된 송○○ 판사의 게시글은 '사법부를 흔드는 두 가지 손(촛불 재판 의혹 규명 촉구)', '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 이외에 최○○ 부장판사의 FTA 강행처리 비판 글 게시 이유 윤리위 회부에 대한 비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3건) 등임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7】 기재와 같음

25)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친한 선후배 명단에 대한 취합, 관리의 필요성도 제시됨

9.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가. 문건 개요

- 기획조정실이 2016. 7.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 정례화 필요성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음
- 당시의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에 비추어 법관 사회 내부 여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전제로 2016년에 각급 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실시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문건 작성의 배경으로 제시됨

나. 관련 내용

- 당시의 대법관 제청결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정리함. 그 중 '박○○ 판사가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위 주제에 관하여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박○○ 판사의 학생운동 경력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연구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는 등, 박○○ 판사가 선출을 통해 취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이어서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박○○ 판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법관 사회 여론 동향 및 간담회 필요성

가. 최근 법관 사회 주요 이슈

▣ 대법관 제청 관련 ⇨ 비판적 법관들도 공개 반발은 어려운 상황

▣ 선출을 통해 취임함으로써 법관 여론 주도 명분을 가진 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 의장(박○○ 판사)의 경우 ⇨ 표면적으로 언급 없음

▶ 최근 서울중앙 단독판사들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 없었음 ⇨ 자신이 추진 중인 '좋은 재판 연구회' 활동에 집중

- ※ 박 판사의 경우 학생운동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초임지가 서울중앙임에도 재판연구관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마시 슬로건인 좋은 재판, 행복한 판사 관련 활동에 집중할 것' 이라는 평 있음

- 그 외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박○○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이 파일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위 문건은 삭제된 상태로 복구되지 않았음

10. 조사 결과

-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 등에 관한 비공식적인 정보수집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작성의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법원사찰', '재판개입'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크므로 극히 자제되어야 함
-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임
- 심의관 출신 등의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하여 해당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익명카페, facebook 등의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으며, 나아가 익명카페 등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익명카페 자진 폐쇄의 유도 방안까지 검토함
-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대상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회원 등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고, 그 외에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하여 대내외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사법정책 현안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의견의 적극적 수렴과 사법정책에의 건설적인 반영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이른바 '선제적인 대응'으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해당 정보수집의 목적과 의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문제됨

- 우리법연구회, 인사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프로필 등 일반적인 신상정보 이외에도 성향과 스타일, 과거 연구회 활동이력, 코트넷의 비판적 게시글 이력, 최근 동향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함께 수집되어 여러 문건에서 신중한 고려 없이 사용되었고,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 등 법관들의 성향을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용어 역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V. 특정사건 담당재판부 등의 동향 파악

-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1. 문서 정보

- 위 문건은 기획재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2014년 ○○○' 폴더의 하위 폴더인 '기조실'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정상 파일임²⁶⁾
-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한 주요 키워드 중 '김동진'²⁷⁾, '동향'이라는 키워드로 추출되었음
- 위 문건은 원○○ 외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정원법위반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²⁸⁾)의 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0. 작성되었음

2. 주요 내용

- 피고인 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서 특정 외부기관(BH),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임
-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

26) 위 폴더 명 '2014년 ○○○'에 기재된 ○○○ 당시 심의관은 위 문건을 작성한 바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위 문건의 양식은 행정처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고 진술함

27)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임

28)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전의 2심임

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재됨

-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BH)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기재가 있음
- 문건의 세부 내용은 【별지 8】 기재와 같음

3. 검토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판예규 제1306호)'는 사법행정지원이 필요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각급 법원의 보고책임자가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²⁹⁾ 보고된 중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판결의 내용과 파장, 상소심 전망, 판결에 대한 대내외 여론 등을 검토, 분석하여 평가하고 내부 보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 업무의 일환으로 보임
- 그러나 위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 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29) 위 예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및 전·현직 법원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피고인인 형사 사건 등을 필요적 보고 대상사건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제1항),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추어 신문과 TV 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2항)

VI. 종합의견

1. 경과

- 위원회는 활동개시와 함께 조사대상 컴퓨터를 특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였음
- 공용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개인적인 문서와 이메일 제외)가 조사의 대상이고, 문제된 시기에 작성된 문서를 현안과 관련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해당 문서만을 선별하며, 조사 과정에 관련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면, 관련 당사자의 사적 정보가 누설되거나 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고, 이러한 문서의 열람에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조사에 착수하였음
- 문건에 나타난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문건과 관련된 인적 조사는 해당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음

2. 문서 선별과 판단

- 법관이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들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와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문서는 그 대응 방안이 실현되었는지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그러한 경위와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음
- 위원회는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를 보고서에 담았음

3. 조사 결과

가.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판사회의 경선과 관련하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출마한 법관의 인적 사항과 세부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판사의 선출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대응 방안의 실행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권의 판사회의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음

다.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하여

- 특정 연구회 회원인지, 이들과의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진보와 보수, 강성과 온건 등으로 법관을 분류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명단을 작성한 부분은 그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 집단의 법관 내지 특정한 가치관을 지닌 법관을 특별히 취급하거나 배제의 요소로 이용할 여지가 있음

라.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들로서 인사나 검찰부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음. 그 내용 가운데 내부 게시판,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 및 행정처에 호의적인 법관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의 자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수단

과 방법의 면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음

마. 특정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과 관련하여

- 법원행정처가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외부기관의 문의를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부분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